

갑)

가. 폐지이유

길음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택지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재대)

○'61.12.5 제정된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길음택지조성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길음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는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 단서중 "바에 따른다."를 "설치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조례 제2617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부칙 제1항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 부칙제1항 단서중 "제2조·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1조·제14조제2항·제19조·제21조·제21조의2 및 제32조"를 제2조·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1조·제14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1조의2·제25조 및 제32조"로 하고, "3월"을 "6월"로 한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주민이"를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이"로 하고, 동조제5호중 "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를 "멸실된 후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현지개량사업 대상 건축물은 법 공포일"을 "현지개량사업 및 환지방식사업 대상 건축물은 법 공포일(1989.4.1)"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상 건축물의 개량범위와 방법은"을 "대상 건축물의 개량범위는 그 대지가 20제곱미터 이상(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잔여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하며, 개량방법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환지방식사업) 환지방식사업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기존도로 폭 2미터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이하인 지구
-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지구
- 3. 도로 형상이 부정형하거나 세장형(대지 폭 3미터미만을 말한다)으로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지구

제10조제1항중 "현지개량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거실의 채광 등) 지구안의 건축물의 거실 등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의 각 2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측벽에 대한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 기준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를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열관류율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축물 및 특례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2배이하(특례제한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이하)”를 “2배이하”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2분의 1이상(특례제한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지구안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특례제한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주거환경개선계획이 현지개발방식 또는 환지방식사업인 지구안의 건축물(이하 “지구안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 중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

중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2. 높이 4미터를 초과하고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를 환지방식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본다.

⑤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세대이하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남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4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는 3미터 이상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단서중 “바에 따른다.”를 “설치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165제곱미터”를 각각 “20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한도에”를 “20제곱미터에”로 한다.

조례 제2617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부칙 제1항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조례 제18조 관련)  
 (단위 : 퍼센트)

용도별 구분	주 거 용	비 고
특례건축 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	80
특례제한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	7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	60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1조·  
 제14조제2항·제17조·제18조(별표)·제19조·  
 제21조·제21조의2·제25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97

제출년월일 : 1999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교통위원회위원장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하였던  
 교통순시원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  
 행령 제69조의 규정이 1997.12.6.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1997.  
 12.6. 삭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  
 인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

1999. 12. 28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청원일자 및 청원자 : 1999년 12월 22일, 박  
 병진외 216명  
 ○소개의원 : 김성환의원(국민회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22일  
 ○상정일자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1999년 12월 22일) 의결·상정

2.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5년이상 방치되어 있던 부국연  
 립주택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재  
 건축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부내역을 확